

2026년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개발협력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(ODA) 각 사업별 사업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6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 지정 개요

□ 목적

- 중소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(ODA)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수원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사업별 수행기관 지정

□ 각 사업별 지정기간 및 예산 규모

- 지정규모 : 각 사업별 각 1개사 선정

사업 형태	공고사업명	지정기간	'26년도 지원규모	총 지원규모	사업유형
프로젝트	베트남 스마트공장 실증 데모센터 구축 및 제조 혁신 전문인력 양성	협약체결일로부터 '29. 12. 31까지	600백만원	11,400백만원 내외	양자무상
	몽골 울란바타르 스타트업 타운조성 및 액셀러레이팅	협약체결일로부터 '26. 12. 31까지	707백만원	6,500백만원 내외	양자무상

* 예산은 매년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

2

신청자격 및 선정요건

□ 신청자격 및 요건

-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(기능, 조직, 인프라 등)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
 - * 개별 또는 컨소시엄 가능
-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

-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
 - 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□ 선정요건

① 수원국 대상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역량 보유

- 수원국과 협력사업 운영경험 및 현지 네트워크 보유 등 사업추진 역량 보유

②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

- 사업수행기관 내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

- 사업 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의 장*을 제외하고,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
 - * 중소기업 지원 또는 국제개발협력(ODA)사업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며,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로 인건비 산정 가능
- 전담인력(전담조직의 장 제외)은 해당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자 또는 국제협력사업 경력 3년 이상자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업운영 전반의 필요한 기능 수행

3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

□ 신청 및 접수기간 : '26. 1. 6.(화) ~ '26. 1. 21.(수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

- ▶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▶ 신청 시 신청기관 공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▶ 접수는 제출기간 마감일 18:00 이내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

□ 제출서류

-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-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
-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별지 제3호 서식) 1부
- 사업제안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 - * 사업제안서는 신청기관의 필요시 변경 가능
- '24년 재무제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 자료 1부 (자유양식)

※ 제출서류 양식 등 상세사항은 사업별 '중소기업 국제개발협력 (ODA) 사업 수행기관 공모 사업제안서 등' 파일을 참고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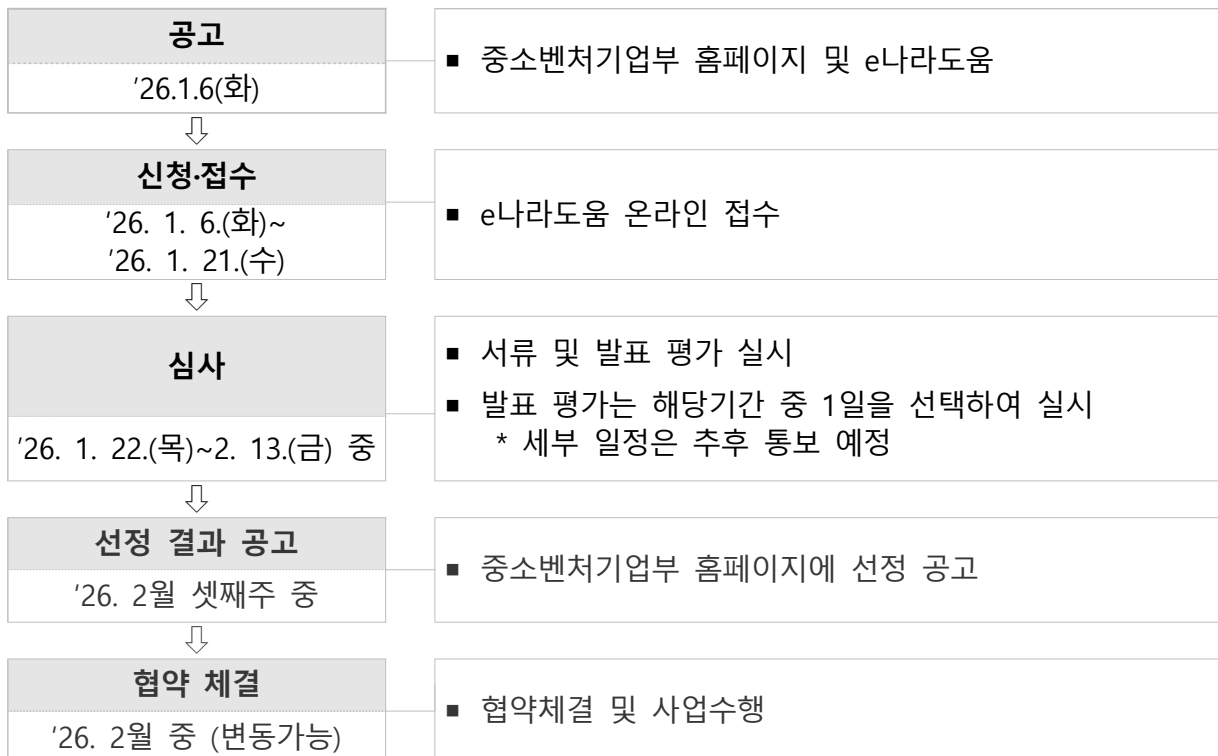
□ 평가방법

-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

* 서류평가 점수 및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
- ① (서류평가) 신청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(사업계획서 등) 기반의 서류평가를 실시
- ② (발표평가) 신청기관의 대표자(또는 전담조직 팀장)의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실시

□ 추진일정(안)



4

유의사항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신청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청은 무효

- 제출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
 -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와 제안서·사업계획서·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
 - * 허위서류 등 제출 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
- 제출서류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외 일부로 간주되고,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신중히 작성 요망
-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안서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신청기관이 모두 부담함
-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음

5

문의 및 접수처

문의

-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 (044-204-7552, 7557)

접수처

-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

※ 신청 관련 자료는 e나라도움에 업로드 후,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